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232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자매결연 등 대상(안 제4조)

-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

### 나. 의회동의 등(안 제7조)

- 국외도시 자매결연 시 의회 동의

### 다. 자매결연 등 체결(안 제8조)

라. 교류사업의 지원(안 제9조)

-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노력

마. 자매결연 파기(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검토할 사항과 상호 교류여건 조성, 협력방향 모색 등 사전 교류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
- 안 제7조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에는 자매결연 체결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교류사업의 각종 편의제공 등 재정 지원과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지속적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도시간의 특색을 드러내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유대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상 도시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 지원, 지속적 교류활동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 자의적인 파기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